「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2일, 평창군수 제출

O 회부일자 : 2018년 7월 10일 회부

O 상정일자: 제23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8년 7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가. 제안이유

-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성인 인구 등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약 10,447명으로 추정,
- O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O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삷의 질 향상 및 비문해자의 문해생활 보장을 위한 교육 지향
 -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향
 -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장
-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 경비지원 및 대상(제6조)
 - 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
 - 행사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 참가자의 체험학습 운영비

○ 문해교사 양성 등(안 제8조)

-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최순철)

- 본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으로,
- O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
 -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범위
 - 안 제6조에서는 경비지원 및 대상
 -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사 양성과 업무의 위탁
 -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표창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 부여를 통해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창군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창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 적·성별·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3.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협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진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 3. 문해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육성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
 - 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 3.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 가. 사업추진비
 - 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 4.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경비
 - ② 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문해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군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으로 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문해 교사·강사를 양성하고,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기관·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성인문해교육 진흥, 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 1.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
 -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업무의 위탁
 - 3. 「평창군포상조례」: 제10조의 표창
 - 4.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